

##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후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와 피해 구제에 관한 고찰

백 경 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

### ■ 국문 초록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역학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감염병 관련 정보들 중 일부를 공개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신설되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나 대응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필요하지 않고 공개될 경우 감염병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누출하기도 하였고, 그 정보는 미디어를 통하여 2차적으로 가공되어 확산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표한 감염병 관련 개인 정보를 미디어가 전달하는 것은 당시의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것으로, 그 과정에서 감염병과 무관한 개인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병 환자의 인격권 침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책임을 부담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미디어가 그 공표된 개인 정보를 가공 혹은 확장시킴으로써 감염병 환자의 인격권이 침해된 부분은 미디어의 책임 부담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해당 감염병 환자에게 잊힐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및 미디어의 공표가 명예훼손에 이르러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어떠한 피해 구제수단이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감염병 위기, 정보공개,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잊힐 권리

\* khbaek@inha.ac.kr

## 목 차

- I. 서론
- II. 감염병 위기와 정보 공개
  - 1. 감염병 위기와 위기 경보의 단계
  - 2. 감염병 위기 시 정보 공개
  - 3. 역학조사와 감염병 위기 시 정보 공개와의 관계
  - 4. 확진 환자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의 내용
- III. 국가 등의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피해 구제
  - 1. 국가 등의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와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의 관계
  - 2.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환자의 구제수단
- IV. 미디어의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와 민사상 피해 구제
  - 1. 미디어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그 한계
  - 2. 미디어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 수단
- V.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공개 및 미디어의 보도 실례와 감염병 환자의 피해 구제
  - 1.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공개 및 미디어의 보도 실례
  - 2. 감염병 환자의 인격권 침해와 그 피해 구제
- VI. 결론

### I. 서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COVID-19], 이하 ‘코로나19’라 한다)로 인한 작금의 사태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 법’이라 한다)」상 사회 재난에 해당하는 감염병 위기이다.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 위기의 단계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 단계인 심각단계가 1년을 넘어가고 있고 2021년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종래 우리나라의 감염병 위기의 예로 2009년의 신종 인플루엔자 A(Novel Swine-Origin Influenza [H1N1], 신종 플루) 사태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감염병 위기가 1년 이상 장기화되지는 않았고, 그렇기에 대

규모의 역학조사와 그 결과 이루어지는 감염병 위기와 관련된 개인 정보의 공개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던 중 2015년의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메르스) 사태에서 ○○병원의 의사였던 35번 환자의 증상 발현 시기, 접촉자 현황과 이동 경로 등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개인 정보를 서울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하였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되는 사태가 발발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sup>1)</sup>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을 2015. 7. 6. 법률 제13392호로 일부개정하면서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감염병 위기 시 공표할 수 있는 개인 정보의 범위가 무엇인지를 규율한 바 있다.

감염병 위기 시 개인 정보의 공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역학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감염병 관련 정보들 중 일부를 공개하는 것이고, 그중에는 감염병 환자의 개인 정보도 포함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명문의 신설 규정을 통하여 감염병 위기 시 개인 정보 공개의 범위를 입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나 대응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필요하지 않고 공개될 경우 피공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개인 정보까지 누출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정보 중 일부는 해당 감염병 환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내용까지 밝혀지기도 하였으며 지극히 민감하고 사적인 정보였는바, 이러한 공개된 정보에 대하여 해당 감염병 환자가 자발적으로 삭제 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절차가 「감염병예방법」상 부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이에 더하여 그 정보가 미디어를 통하여 2차적으로 가공되어 확산되었고, 일부 감염병 환자의 경우에는 역학조사 시 금지행위를 하여 「감염

1) 전자신문 (2015. 6. 15). 메르스 의사, 가족, 박원순 시장에 불만 표출, 박원순 시장이 스트레스 주는 바람에 면역력 약해졌다. URL: <https://www.etnews.com/20150615000134>

병예방법」을 위반한 자가 됨으로써 수사 절차와 재판 절차까지 순차적으로 연계되어 종래 감염병 위기 시 공개될 필요가 없는 정보가 삭제되지 못한 채 누적적으로 불필요한 개인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위기 시 개인 정보 공개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감염병예방법」등 하위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개인 정보의 공개 범위가 축소되고 이의신청 절차 등이 마련되었으며, 법상 공개가 가능한 개인정보도 일정 기간 공개한 후 삭제하는 지침이 정비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현실에 있어서 미디어를 통하여 공개되었던 감염병 위기와 무관하고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도 불필요한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들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미디어를 통하여 공표되어 있는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감염병 환자에게 위와 같은 개인 정보들에 관하여 잊힐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및 그 연장선상에서 미디어의 공표가 명예훼손에 이르러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미디어에 대하여 법적 구제를 강구할 수단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감염병 위기와 정보 공개

### 1. 감염병 위기와 위기 경보의 단계

「재난안전 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재난이라고 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의 경우 사회 재난으로 분류한다(제3조 제1호 나목). 「재난안전 법」상 위기경보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재난의 징후를 식별하거나 그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위험 수준과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로써 발령하는 것이다. 위기경보의 단계는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구분하고 있다(동법 제38조 제1항, 제2항).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은 위기 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 수준이 낮아서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이고, 주의는 위기 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국가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이며, 경계는 위기 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를,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은 위기 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국가위기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4; 이옥철, 2015).

한편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동법 제34조),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의 단계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정부 기관의 주요 대응활동이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 양립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감염병 위기 경보의 단계가 상이할 수 있다.<sup>2)</sup>

## 2. 감염병 위기 시 정보 공개

종래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국민이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여 왔고(동법 제6조 제2항), 이러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의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5. 7. 6. 법률 제13392호로 「감염병예방법」을 일부개정하면서 명문 규정으로 신설하게 되었다.<sup>3)</sup>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2) 감염병 위기의 경보 단계에 의거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대응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URL: <http://www.cdc.go.kr/contents.es?mid=a20301020300>(2021. 7. 20. 최종 방문)

3) 당시 개정 이유로 “위험성 높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감염병 유입 초기에 이를 신속히 관리할 수

공개의무의 발동 시기, 공개의무 주체의 변경과 확대, 이의신청 제도와 삭제 제도의 신설, 공개 제외 정보의 분리, 공개정보의 추가 등에 관하여 논의를 통하여 개정 작업을 거쳐 왔다.<sup>4)</sup>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감염병 관리 제도의 운용 상 나타난 각종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 이유 참조. URL: [https://www.law.go.kr/LSW//lInfoP.do?lsiSeq=172762&lsId=&viewCls=lsRvsDocInfoR&chrClsCd=010102#\(2021. 7. 20. 최종 방문\)](https://www.law.go.kr/LSW//lInfoP.do?lsiSeq=172762&lsId=&viewCls=lsRvsDocInfoR&chrClsCd=010102#(2021. 7. 20. 최종 방문))

4) 이를 도표화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에 대한 개정 연혁

| 개정 연혁                         | 조문 내용  | 비고  |
|-------------------------------|--|---|
| 법률 제17067호, 2020. 3. 4. 일부개정  | ① ……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br>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br>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br>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br>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br>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공개의무 발동 시기를 감염병위기 정보단계 중 주의 이상의 정보에 해당할 때로 구체화함.<br>-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공개방법의 구체화 및 공개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법률로 이동하여 신설 |
|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 ① 질병관리청장은 …… 공개하여야 한다.<br>② …… 질병관리청장에게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br>③ 질병관리청장은 ……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 주체 및 이의신청 상대방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  |
| 법률 제17491호, 2020. 9. 29. 일부개정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br>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   | -정보공개 주체 및 이의신청 상대방을 질병관리청장에 더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그리하여 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일부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를 기준으로 할 때, 제1항에서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 공개 시기는 감염병 위기가 주의 이상일 경우이고, 공개 정보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이며, 공개 제외 정보는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라고 각각 규율을 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 제외 정보로는 성명, 읍·면·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정보가 있고(「감염병예방법

|                                     |   |   |
|-------------------------------------|---|---|
|                                     | <p>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p> <p>③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 정보공개 및 삭제와 ……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 <p>으로 확장함.</p> <p>-공개 제외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명시하는 방식을 도입함.</p> <p>-공개 필요가 없어진 때에 공개된 정보의 삭제 제도를 도입함.</p> |
| <p>법률 제17920호, 2021. 3. 9. 일부개정</p> | <p>① …… , 감염병의 지역별·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p>   | <p>-정보공개 대상을 추가함.</p>   |

시행령」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정보공개법의 범위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제1항).

### 3. 역학조사와 감염병 위기 시 정보 공개와의 관계

#### 가. 감염병 위기와 역학조사

‘역학(疫學)’은 인간의 건강 상태와 질병의 자연사를 기술하여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질병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관한 감시·관리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인바(이성은, 1996), 이에 근거한 ‘역학조사’는 감염병의 영역에서는 현지조사와 지역사회로부터의 검체 채취·분석 작업을 통해 감염병의 기원과 감염자를 확인하고, 감염자의 증상의 발현 시점과 이동 동선 등을 알아내는 역할을 한다.<sup>5)</sup>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 또한 역학조사를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 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면서(동법 제2조 제17호), 전자의 역학조사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sup>6)</sup>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동법 제18조 제1항).<sup>7)</sup>

5) URL: <https://www.cdc.gov/publichealth101/epidemiology.html>(2021. 7. 20. 최종 방문)

6) 우리나라의 역학조사 기관의 이원화가 감염병 위기 시 신속 대응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독일의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와 같이 감염병의 예방, 조기 인지, 통일적 계획을 수립하는 일원화된 기관이 필요하다는 견해로 윤진아 (2018). 독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제 고찰. <법과 정책연구>, 18집 4호, 281.

### 나. 역학조사 시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와 감염병 위기 시 공개가 필요한 정보와의 관계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는 감염병에 관련된 역학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 사항, 감염병 환자 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 경로, 감염병 환자 등에 관한 진료기록,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동시행령 제12조 제1항). 이를 감염병 위기 시 공개가 필요한 정보와 비교하여 열거하여 정리하면 <표 2>와 같은 바, 역학조사 시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가 감염병 위기 시 공개정보의 범위보다 더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역학조사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역학조사 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감염병 위기 시 국민에게 공개가 필요한 정보가 선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2> 역학조사 시 수집되는 정보와 감염병 위기 시 공개가 필요한 정보의 각 범위

| 역학조사 시 수집되는 정보  | 감염병 위기 시 공개 필요 정보   | 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   |
|---|---|--|
|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 사항<br>-감염병 환자 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br>-감염병의 감염 원인 및 감염경로<br>-감염병 환자 등에 관한 진료기록<br>-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 -시·구 단위 이상의 거주지 주소<br>-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 수단<br>-진료 의료기관<br>-접촉자 현황<br>-감염병의 지역별·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 -성명, 성별, 나이<br>-읍·면·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br>-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정보 |

7) 「감염병예방법」에서도 역학조사 방법을 ①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② 인체 검체 채취 및 시험, ③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④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⑤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으로 구분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의 3); 박미정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조사에 대한 비례 원칙의 고찰. <생명윤리정책연구>, 14권 2호, 4-5.

#### 4. 확진 환자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의 내용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2020. 10. 7.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경로 등 정보를 공개할 때, 공개 범위에 대한 지역별 편차 및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 —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및 경제적 피해 발생 등 —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을 발표하여 각 지자체에 하달하고 그 준수를 요청하였다(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 2020).

구체적으로 i) 공개 대상은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을 통해 감염병이 확인된 자인 ‘감염병 환자’로 한정하였고(「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 ii) 공개 시점은 감염병 위기가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로 발령될 때로 하며, 공개 기간은 정보 확인 시 ~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까지이며, 해당 공개 기간이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iii) 공개 범위와 관련하여 개인 정보는 성별, 연령, 국적, 읍·면·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되, 직장명의 경우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iv) 시간적 범주는 코로나19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하며, 만약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v) 장소·이동 수단의 경우 이를 특정하지 않으면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 수단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하였다(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 2020).

### Ⅲ. 국가 등의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피해 구제

#### 1. 국가 등의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와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과의 관계

##### 가. 국가 등의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알 권리(right to know)는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령·수집할 수 있는 자유권이면서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한다.<sup>8)</sup> 이때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원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정보원으로, 신문, 방송 등의 미디어 매체, 전시회, 박물관, 공적 행사 등이 해당한다(정종섭, 2016).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에 관한 「감염병예방법」상의 규정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에서 비롯된다(동법 제6조 제2항). 따라서 국민은 동 조항을 통하여 감염병 관련 정보를 국가에 대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알 권리의 측면에서 미디어와 같은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원을 통하여서도 자유롭게 수집, 선택, 수령할 수 있게 된다.

##### 나.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들이 공존하며 교차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정보를 알 권리를 지니는 한편 자신의 정보에 관하여 결정하고 관리·통제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정종섭, 2016; 성낙인, 2018). 전자는 일

---

<sup>8)</sup> 현재 1991. 5. 31. 선고 90헌마 133 결정.

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령·수집할 수 있는 자유권이면서 동시에 국가기관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정종섭, 2016). 후자는 자기의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내지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으로 명명되며(정종섭, 2016),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내지 프라이버시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정종섭, 2016; 백경희, 2017). 사법 영역에서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격권의 범주 내로 분류하고 있다.<sup>9)</sup> 이에 정보주체인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이용과 처리에 있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고(정보 자기결정의 원리),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며(목적 구속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의 범위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도이어야 하고(필요성의 원칙과 최소 수집의 원칙),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수집·처리·이용 권한과 관할이 분리되어야 하며(정보의 권력 분립 원칙),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자 및 정보처리 과정 등 정보의 흐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투명성의 원칙)(장주봉, 2012). 또한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 종류의 기록 금지, 개인정보 수집 방법의 제한, 정보주체 의사에 어긋나는 개인정보 입력의 금지, 개인정보의 무제한 축적 금지, 자신의 정보에 대한 액세스권 보장, 개인정보에 관한 정정권 보장 등이 요청된다(성낙인, 2018).

이러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구체화되어 있다. 즉,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을 때 그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가능하고(제15조 제1항 제1호),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소정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 지원림 (2021). <민법판례>. 서울: 박영사.

(제15조 제1항 제2호).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이라는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목적으로 감염병 환자에 관한 일정 범위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sup>10)</sup> 감염병 환자의 사전 동의가 없더라도 그 공개가 가능하다.

그런데 감염병 환자의 측면에서는 개인의 정보가 본인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공개되는 것이기에, 감염병 환자의 자기정보 관리·통제권,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에 과잉금지 원칙에 대한 저축 가능성 측면에서 양자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 「감염병예방법」이 지니는 목적인 감염병 예방과 감염 차단을 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재난인 감염병 위기의 경보단계 주의 이상에 해당하여 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높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 환자의 일정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sup>11)</sup> 둘째,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 감염병 환자의 성별, 나이는 감염 전파의 차단이나 예방과는 무관하고, 직업의 경우 해당 직군이 마치 감염병을 전파의 원인이 되는 것과 같은 낙인을 찍는 효과를 가져오고 성별, 나이, 이동 경로와 결합할 경우 해당 감염병 환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되어, 그 공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필요하고 그 공개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정지영·표시영, 2021). 셋째, 감염병 환자의 이동 수단과 이동 경로, 접촉자 현황의 경우, 이를 공개함으로써 감염의 우려가 있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선별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숨은 감염병 환자등을 조기에 격리

10) 송가영 (2020). 감염병환자 개인위치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위험성 증대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학연구>, 통권 10호, 10-11.

11) 백경희·김자영 (2021). 감염병 위기대응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집에 대한 법적 고찰. <법학논총>, 28집 1호, 15; 정지영·표시영 (2021). 코로나19 감염병 전파에 대한 재난보도에서 개인정보 공개의 적정 범주에 대한 논의. <미디어와 인격권>, 7권 1호, 211.

함으로써 추가적인 감염 전파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되므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감염병 환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어서 침해의 최소 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의 경우 그 공개는 감염병 환자의 자기정보 관리·통제권,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2.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환자의 구제수단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주의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이 공개되었으나 그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34조의 2 제3항, 4항). 따라서 감염병 환자는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제도에 의하여 공개된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위와 같은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 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34조의 2 제2항).

만약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여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환자와 관련하여 공개한 개인정보를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공

무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감염병 환자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 IV. 미디어의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와 민사상 피해 구제

### 1. 미디어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그 한계

미디어가 지니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고전적 의미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더하여 보도의 자유·알 권리·엑세스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를 정립하기 위하여 적극적 자유로 변모하여 왔고,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근간이므로 합헌성 판단의 기준을 다른 자유권의 규제보다 엄격하게 설정하여야 한다는 우월적 지위 이론도 도입되었다. 그리하여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제가 금지되고,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명확성의 이론과 합헌성 추정의 배제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필요최소한도의 규제수단의 선택에 관한 원칙, 비례량의 원칙 또는 이중기준의 원칙이 적용된다(정종섭, 2016; 성낙인, 2018).

12)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 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 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가 지니는 이와 같은 언론·출판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헌법 제21조 제4항). 따라서 미디어는 정보를 수집하여 보도함에 있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가 된다(정종섭, 2016; 성낙인, 2018; 손형섭, 2008; 김봉희, 2009). 이때 ‘명예’라는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더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보호법익이고,<sup>13)</sup> ‘권리’는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비롯하여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내지 프라이버시권 등이 대표적인바, 이들은 인격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sup>14)</sup>

## 2. 미디어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 수단

### 가. 미디어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명예를 침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여 인격권의 침해 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과실,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발생이 필요하다. 증명책임의 부담에 있어서 불법행위책임일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인 미디어의 고의, 과실 등 가해행위의 위법성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또

13) 대법원 2005. 1. 17. 선고 2003마1477 판결; 대법원은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실시하였다.

14) 인격권은 사람이 생명, 신체, 자유, 건강, 명예, 사생활, 초상, 성명, 음성 대화 등에 관하여 갖는 권리를 포괄하기 위한 용어이다.; 불법행위의 제유형[인격권], 편집대표 김용담 (2016). <주석민법 채권각칙>, 제4판, 380-381면. 또한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는 인격권을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민법」 제764조에서 명예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침해된 명예를 회복하기에 적당한 처분으로는 기사의 정정보도 청구, 철회 청구, 기사의 삭제 청구 등이 가능하다.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sup>15)</sup> 따라서 미디어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이들 조항에 의하여 피해자는 미디어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편집대표 김용담, 2016).

한편 「형법」 제307조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고, 미디어가 주체가 되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외에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해자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을 경우 미디어에 대하여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동법 제14조),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미디어에 대하여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동법 제16조), 미디어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특히 「언론중재법」의 반론보도청구권이나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 측에 고의·과실이 없거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어 「민법」과 「형법」상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

15) 대법원 2005. 1. 17. 선고 2003마1477 판결.

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성낙인, 2018).

## 나. 미디어의 명예훼손 여부의 판단 기준

미디어가 지니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개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법원은 “이익형량 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 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 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 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 요소로는 피해 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고 하면서<sup>16)</sup>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sup>17)</sup>

16)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17)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 37647 판결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이 어느 정도 공적 관계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원고들과 같은 시민운동 단체는 업무 수행의 도덕성과 공정성, 자원 조달의 투명성을 그 존립의 중요 기초로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세력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위협을 하고 있다.’라던가 ‘기업체에서 약점을 미끼로 돈을 긁어 쓴다.’는 내용의 발언으로 원고들의 도덕성이나 순수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어 향후 활동에 제약이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심히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이러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바 없고, 오히려 ‘고소 사태도 그중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만, --- 이 말 자체가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발언에서 보듯이, 피고들이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리라는 사정을 예상하면서도 위 발언을 감행한 것은, 피고들이 이미 원고들로부터 다른 사안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것에 대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는 「민법」의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같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관한 규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판단하고 있다(편집대표 김용담, 2016; 김준호, 2021). 대표적으로 사실의 적시를 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형법」 제307조 제1항<sup>18)</sup>이나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형법」 제310조를 민법상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고 있다(지원림, 2021). 즉, 대법원은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하여<sup>19)</sup> ‘상당성의 법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의 자유를 더욱 보호하려는 취지에 입각해 있다고 평가된다(편집대표 김대휘·김신, 2017). 또한 대법원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 내용, 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하여<sup>20)</sup> 민사상 명예훼손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익성과 진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형사에 있어서와 같이 불법행위에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예

---

한 보복의 감정 또는 비방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발언의 내용은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다.

18) 최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재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 결정.

19)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 4947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20)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훼손 행위를 한 가해자 측에 있고,<sup>21)22)</sup> 위법성 조각사유인 언론매체 등 미디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서 미디어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sup>23)</sup>

#### 다. 잊힐 권리와 사후적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청구권

잊힐 권리 내지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명문으로 법제화되거나 개념이 통일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나, 정보주체가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검색되는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의 원본을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하여 접근을 배제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조소영, 2012; 이부하, 2017; 박아란·김현석, 2021; 최진웅, 2020).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이 혼합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이해하고 있다.<sup>24)</sup> 방송통신위원회도 잊힐 권

2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2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3)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79262 판결.

24) 이부하 교수는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 공개된 정보가 자신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관련 없이 정보주체가 자신 정보에 대해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문제이면서 정보주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인식될지

리를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이라 명명하면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무 등에 근거하여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6).

미디어와 관련하여 잊힐 권리와 관련된 문제는 미디어가 보도를 하면서 개인정보의 과도한 공개를 통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할 권리가 존재하는지가 미디어의 기사가 지니는 역사적 가치와 충돌하는 영역에서 다수 발생하게 된다. 특히 현재의 시대는 대중이 방송의 송출이나 신문의 인쇄 지면을 통한 편찬과 같은 1회성의 기사 현출 방식 외에도 인터넷에 기사를 게재하는 형식을 선호함으로써 미디어의 기사가 인터넷에 인위적으로 삭제가 되지 않는 한 영속성을 지니면서 축적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은 잊힐 권리의 측면에서 「민법」상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써 기사삭제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기사삭제청구권을 「언론중재법」에 신설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에 부딪혀 명문의 규정으로 도입되지 않았는바, 현재 판례에 의하여 민사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이수중, 2016).

대법원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을 통하여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 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

---

영향을 미치는 과정인 ‘자기표현’과 정보주체가 자기전달을 통해 그 외부적 형상이 다른 사람의 관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기성찰을 위한 ‘내적 자유여지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적 인격권’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권에 근거한 기사의 삭제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아울러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법원은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 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잊힐 권리로서의 기사 삭제의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공고히 한 바 있다.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사후적 방해제거청구권으로서의 기사 삭제 청구에 대해서 사전적 방해예방청구권보다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바, 대법원은 “침해행위의 사전 금지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이를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sup>25)</sup>

25) 권태상 (2020). 명예훼손과 기사삭제청구권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9권 2호, 242-243; 그 근거에 대하여 학설은 “공개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대중들에 의한 평가 선택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고, 사후제한은 사법절차를 통하여 법적 책임을 부과하므로 절차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으나 사전제한은 절차의 신속성을 위하여 절차의 적정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위 서울시장이 35번 환자에 대하여 증상의 발현 시기나 확진 시기를 중앙정부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오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한 미디어에 대하여 책임을 직접적으로 추궁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sup>28)</sup> 하지만 위 서울시장의 35번 환자와 관련한 기자회견으로 국민의 관심이 35번 환자에게 집중되자 미디어는 35번 환자의 경과와 구체적인 소속기관, 성별, 진료 경과 등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35번 환자가 사망하였다거나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오보가 속출하기도 한 바 있다.<sup>29)</sup> 이에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015. 6. 11. 35번 환자의 경과와 관련하여 오보를 낸 미디어에 대하여 유감의 표시를 표명하기까지 하였고,<sup>30)</sup> 해당 언론사들은 보도를 자체적으로 정정하는 수순을 밟기도 하였다.

#### 나. 코로나 사태 중 인천학원 강사에 대한 민감 정보 공개 사건

코로나 사태는 2020. 1. 19. 중국 우한으로부터의 입국자가 최초 확진이 된 이래 감염병 위기 경보는 ‘주의’ 단계로 조정되었고,<sup>31)</sup> 2020. 2.

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5/09/15/2015091500139.html

- 28) 박원순 시장은 이후 여러 차례 35번 환자에 대하여 사과를 하기도 하였으나, 한 시민단체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위 행위에 대하여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하였다.; 메디칼 업저버 (2016. 4. 24). 35번 환자에 ‘마음의 상처’ 입혀 미안하다. URL: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986> ; JTBC (2015. 6. 15). “메르스 허위사실 유포” 의료단체, 박원순 시장 고발. URL: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927657](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927657)
- 29) 미디어스 (2015. 6. 12). 뇌사-사망-위독?... 메르스 35번 환자 ‘죽이고 살린’ 언론들. URL: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95>
- 3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5. 6. 12). 삼성서울병원 의사 뇌사 보도 사실무근. URL: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796502&call\\_from=naver\\_news](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796502&call_from=naver_news)
- 3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 1. 20). 검역단계에서 해외유입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 확인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대응. URL: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

23.부터 ‘심각’ 단계로 격상되어 1년 이상 최고 등급의 단계가 지속되고 있다.<sup>32)</sup> 이러한 상황에서 2020. 5. 경 발생한 인천학원 강사 사건의 경우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즉, 2020. 5. 6. 용인에 거주하는 29세 남성 확진자가 이태원을 방문한 동선에 클럽이 포함되어있음을 지방자치단체가 밝혔고, 미디어는 이태원 소재 ‘게이클럽’을 방문하여 상당수 성 소수자가 접촉자 명단에 포함되어 ‘커밍아웃’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이어갔다.<sup>33)</sup> 특히 인천학원 강사에 대하여는 2020. 5. 13. 인천시가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후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미추홀구 용현1·4동 거주 24세 남성’으로 공개하였고,<sup>34)</sup> 그 후 인천학원 강사의 역학조사 시 거짓 진술 내용<sup>35)</sup>과 직장명,<sup>36)</sup> 소속 대학, 그로부터 감염이 전파된 사례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 이를 조합할 경우 특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sup>37)</sup> 그러자 이태원 클럽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인천학원 강사를 비롯한 접촉자들이 ‘성 정체성’이라는 민감 정보가 유출될 우려로 인하여 검사를 기피하자 정부는 익명검사와 검사비 지원이라는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고,<sup>38)</sup> 이후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에

NT\_SEQ=352435

- 32) 의료&복지 뉴스 (2020. 2. 24).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으로 상향. URL: <http://www.mediwelfar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9>
- 33) 머니투데이 (2020. 5. 7). 생활방역 전환되자 재시작된 지역감염...클럽 음성화 우려. UR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0709002251223>
- 34) 인천in (2020. 5. 13). 미추홀구 학원서 8명 집단 감염 - 이태원 클럽 방문 확진 강사가 전파. URL: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002>
- 35) 한국일보 (2020. 5. 13). “직업 없다” 인천 학원강사, 거짓 진술... 동료·학생 등 무더기 확진. URL: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130985327440>
- 36) MTN(엠티엔) (2020. 5. 13). 인천 미추홀구, 세움학원 확진자 3명 ‘팔복교회 신도 진단검사 실시 예정’. URL: [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0051310235243413](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0051310235243413)
- 37) 뉴스1코리아 (2020. 5. 13). 인천 학원강사에 감염 동료도 같은 대학 소속...대학 2개동 임시폐쇄. URL: <https://www.news1.kr/articles/?3933878>
- 38) 뉴시스 (2020. 5. 13). 이태원 일대 방문·접촉자 모두 검사비 지원...익명검사도 무료. URL: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3\\_0001023147&cID=10201](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3_0001023147&cID=10201)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후 인천학원 강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시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천시로부터 고발되어 기소되었고, 1심인 인천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20고단6613 판결은 징역 6월을,<sup>39)</sup> 이후 2심인 인천지방법원 2020. 12. 4. 선고 2020노3558 판결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여 징역 6월이 선고된 바 있다. 인천학원 강사에 대한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 또한 미디어를 통하여 보도되었고, 그 내용에서 다시 한번 인천학원 강사의 개인정보들이 다시 언급되기도 하였다.<sup>40)</sup>

한편 인천학원 강사에 대하여는 2021. 3. 11.자 인사이트·위키투리·매일신문에서 ‘이태원 7차 감염을 일으킨 학원강사가 2021. 3. 10. 인천 영종도 수련원에서 코로나19 치료 중 극단적 선택을 하여 숨진 채 발견되

&pID=10200

39) 1심 법원은 유리한 정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20대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일반인들과는 다소 다른 피고인의 성적 지향 내지 성정체성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치 못한 채 순간적으로 그릇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라고 언급하였고, 불리한 정상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3번의 걸친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직업, 이동 동선 등에 관하여 20번 이상 거짓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인 2020. 5. 12.까지 피고인과 접촉한 사람들에게 대한 역학조사 및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 결과 약 6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가 이루어져야만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장기간의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가게 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였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겪어야만 했던 공포심과 두려움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을 적시하였다.

40) 국민일보 (2020. 10. 8). 거짓말로 ‘7차 감염’...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URL: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89214> ; 인천일보 (2020. 12. 6). 이태원 클럽 다녀온 뒤 거짓말로 7차 감염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 항소심도 실형. URL: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0154>

었다’는 내용으로 사실관계와 달리 보도되어 다시 한번 인천학원 강사에 대한 그동안의 미디어를 통한 내역이 환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오보에 대하여 해당 미디어들은 별도의 사과 없이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sup>41)</sup>

## 2. 감염병 환자의 인격권 침해와 그 피해 구제

### 가. 개관

메르스 사태의 35번 환자의 경우에 미디어를 통하여 서울시의 잘못된 정보 공개가 확장되고, 질병의 경과를 미디어가 가공하여 오보를 전달하는 상황까지 이르러 해당 환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 코로나 사태의 인천학원 강사 사건의 경우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성별, 나이, 주소, 이동 경로를 공표한 것에 더하여 미디어가 해당 환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이 게이클럽이라고 공표하여 그 성적 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을 집중 보도하고, 소속 대학까지 언급하여 해당 환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살을 하였다는 오보까지 보도하여 전방위적으로 해당 환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디어의 이들 실례에서의 정보의 수집과 전달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위기 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표한 개인정보를 통하여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정보에서 미디어가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추출하거나 취재함으로써 인지하게 된 여러 가지 정황을 적극적으로 가공하거나 한걸음 더 나아가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소위 가짜뉴스<sup>42)</sup>를 그대로 보도하여 자극적인 상

41) 미디어스 (2021. 5. 3). 언론중재위, 멀쩡한 사람 ‘사망자’ 만든 오보 ‘불문’ 결정. URL: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73>

42) 이는 온라인상으로 혹은 전통적 미디어 매체에서 발생하여 사실에 근거하지는 않

황을 전달하는 2차적 상황이 존재한다. 따라서 적어도 1단계에 해당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표한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를 미디어가 전달하는 것은 당시의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것으로 그 과정에서 감염병과 무관한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병환자의 인격권 침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부담할 소지가 있으나, 2단계에 해당하는 미디어가 그 공표된 개인정보를 가공 혹은 확장시킴으로써 감염병 환자의 인격권이 침해된 부분에 대하여는 미디어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이하에서는 다양한 구제수단 중 민사상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인격권 침해

먼저 메르스 사태의 35번 환자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성별, 나이를 공개한 부분은 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과는 무관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감염병 환자를 특정시킬 수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인격권의 침해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감염병예방법」상으로 위 정보들은 공개 제외 정보에 해당하나, 당시에는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문이 신설되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해 본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행위에 고의 내지 중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염병예방법」의 위반이나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반면 서울시가 위 35번 환자에 대하여 확진 시기를 잘못 알고 그의 구체적 이동 경로를 공개하면서, 마치 35번

---

으나 마치 사실상 정확한 것으로 믿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뉴스 기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허위조작정보도 불리우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에서 미디어가 가짜뉴스를 대중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의 건강 외에도 국가방역체계를 훼손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지성우, 2019; 정영주·홍종운·박유진, 2021)

환자에게 감염병 확진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함으로써 감염을 확산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한 것은, 그 사실관계를 신중히 확인하지 못한 채 성급히 기자회견을 통하여 잘못된 정보를 공표하였다는 점에서 중과실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적어도 국가배상 책임의 소지는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코로나 사태의 인천학원 강사의 경우에는 당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시행착오의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감염병 환자의 정보와 그와 무관한 공개 제외정보를 구분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학원 강사의 성별, 나이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공표된 것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 다.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가공과 확장을 통한 감염병 환자의 인격권 침해

위 각 사례에서 기사를 보도한 미디어가 부담하는 「민법」상의 책임은 크게 인격권 침해 시 불법행위책임 요건을 갖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제751조, 제764조와 미디어의 위법성이 조각될 경우에도 잇힐 권리로서 「민법」 제214조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사후적 기사 삭제 의무일 것이다. 미디어가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를 가공하고 확장함에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는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이라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한 사실이거나 미디어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sup>43)</sup> 특히 미디어가 감염병 환자에 관한 정보 가공과 확장에 있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43)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다34013 판결

있는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된 감염병 환자에 관한 정보에 기인한 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메르스 사태의 35번 환자의 경우 미디어의 보도를 통하여 인격권이 침해되는 국면은 단순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은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 35번 환자의 질병 경과를 미디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오보를 전달하거나 가공하는 부분이 문제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 보도내용은 진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감염병 환자의 사망 사실은 비록 감염병 위기 시 감염현황에 해당하여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질병 경과까지 적시하는 것은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고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35번 환자의 사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침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증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어 미디어의 언론의 자유보다 35번 환자의 인격권이 더 우선시되어야 할 사정이 있다. 따라서 미디어는 35번 환자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존재한다. 아울러 35번 환자는 미디어의 오보에 대하여 그 기사를 삭제할 권리 또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코로나 사태의 인천학원 강사 사건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기 그 성별, 나이, 주소, 이동 경로로 이태원 클럽을 공표한 것에 더하여 미디어가 해당 환자가 다녀간 그 클럽이 게이클럽이라고 공표하여 그 성적 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을 집중 보도하고, 소속 대학까지 언급함으로써 해당 환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인천학원 강사의 정보들은 진실에 기초한 것이지만 그 정보가 결합되어 장기간 보도됨으로써 인천학원 강사의 인격권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그렇기에 미디어의 보도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는지를 미디어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천학원 강사의 인격권 사이의 비교 형량을 통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생각건대

당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로 성별, 나이, 구체적 주소가 적시되지 않았었고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동 경로를 여과 없이 밝히고 있어 원 정보 자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 코로나19가 확산일로에 있던 가장 큰 원인이 이태원 클럽 등지에서 방역 해이로 인한 집단감염에 기인하였다는 점, 감염의 전파 차단과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인천학원 강사의 동선을 자세히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점, 「감염병예방법」의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 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에서 보도의 공공성이 존재한다는 점(이상도, 2007; 권태상, 2020) 등에 비추어 보면, 미디어의 정보 가공 및 공표 행위에 있어서 불법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 결국 미디어의 감염병 환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예방법」상으로는 성별, 나이, 구체적 주소 등이 감염병의 전파 차단과 예방과 무관한 정보로 공개제외정보로 분류되고 있음에 비추어 인천학원 강사가 잇힐 권리의 행사로서 미디어에 대하여 해당 정보와 관련된 기사를 삭제하여 줄 것을 별도로 민사상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인천학원 강사에 대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살을 하였다는 오보까지 보도한 부분은 앞서 살펴본 메르스 사태의 35번 환자의 질병 경과와 관련된 오보와 유사한 정황이기 때문에, 인천학원 강사는 미디어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 기사 삭제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 VI. 결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 차단은 공공의 이익이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영역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환자의 일정한 개인정보가 공개된다. 그 과정에서 미디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그대

로 전달하는 역할도 하지만,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 정보를 2차적으로 가공하거나 조합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여 감염병 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제도는 「감염병예방법」을 통하여 도입된 이래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제공하여야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 차단 목적을 달성하면서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그에 따라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이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디어 또한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 공개 범위가 법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면서 정보의 전달에 혼선을 빚고 있기도 하다. 감염병 환자의 입장에서는 감염병 위기 시 자신의 개인정보의 일부가 공개되는 것을 수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나,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 차단의 목적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왜곡된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현행 법제와 판례의 법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 참고 문헌

- 권태상 (2020). 명예훼손과 기사삭제청구권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9권 2호, 233-263.
- 권태상 (2020). 범죄자 신상공개와 인격권. <미디어와 인격권>, 6권 2호, 43-79.
- 김두식 (2021). 감염병예방법상의 이동 경로 추적과 역학조사 거부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62권 1호, 121-160.
- 김봉희 (2009). 언론의 자유와 개인적·사회적·국가적 이익의 조화를 찾아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23호, 463-515.
- 김준호 (2021). <민법강의>. 서울: 박영사.
- 민사판례 (2021). 서울: 박영사.
- 박미정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조사에 대한 비례 원칙의 고찰. <생명윤리정책연구> 14권 2호, 1-25.
- 박아란·김현석 (2021). 디지털 시대 피해구제수단으로서 기사삭제 및 열람 차단에 관한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7권 1호, 105-151.
- 백경희 (2017).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방문간호에서 의료정보 동의에 관한 법적 문제점에 대한 소고. <입법과 정책>, 9권 3호, 5-26.
- 백경희·김자영 (2021) 감염병 위기대응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집에 대한 법적 고찰. <법학논총>, 28집 1호, 3-31.
- 보건복지부 (2014).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세종: 보건복지부.
- 성낙인 (2018). <헌법학>. 제18판, 서울: 법문사.
- 손형섭 (2008). 프라이버시권·명예권·언론의 자유의 법적관계 - 표현의 진실성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7권 1호, 309-344.
- 송가영 (2020). 감염병환자 개인위치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위험성 증대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학연구>, 통권 10호, 5-31.
- 윤진아 (2018). 독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제 고찰. <법과 정책연구>, 18집 4호, 255-288.
- 이부하 (2017).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홍익법학>, 18권 1호, 287-310.
- 이상도 (2007). 피의자 보도와 인격권. <언론중재>, 2007년 여름호, 84-91.
- 이성은 (1996). 감염병 관리에서의 역학의 활용. <대한간호>, 35권 1호,

25-30.

- 이수중 (2016). 기사삭제권의 법제화 필요성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통권 157호, 39-74.
- 이육철 (2015). 감염병 대유행과 재난관리. <한국방재학회지>, 15권 4호, 18-23.
- 장주봉 (2012). 개인정보의 의미와 보호범위. <법학평론>, 3호, 34-64.
- 정영주·홍종윤·박유진 (2021).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시론적 논의 -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중심으로 -. <언론과 법>, 20권 1호, 73-114.
- 정종섭 (2016). <헌법학원론>, 11판, 서울: 박영사.
- 정지영·표시영 (2021). 코로나19 감염병 전파에 대한 재난보도에서 개인정보 공개의 적정 범주에 대한 논의. <미디어와 인격권>, 7권 1호, 193-236.
-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 (2020).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1판, 청주: 질병관리청.
- 지성우 (2019). 허위조작정보(소위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48집 2호, 157-192.
- 최진웅 (2020).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법제화에 대한 검토. <NARS 현안분석>, 162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편집대표 김용담 (2016). <주석민법 채권각칙>. 제4판, 서울: 한국사법행정학회.
- 편집대표: 김대휘·김신 (2017). <주석형법 형법각칙>. 제5판, 서울: 한국사법행정학회.

■ ABSTRACT

---

## A Study on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Damage Remedies for Infectious Disease Patients after Information Disclosure during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Baek, Kyoung Hee

Associate Professor, Inha University Law School, Lawyer

Information disclosure during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newly establish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is the disclosure of infectious disease-related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However, while arranging the crisis,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leaked personal information that was not needed by the public for preventing, managing, or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Similarly, a situation in which the information was secondarily processed and spread through the media occurred. Such occurrences could infringe on the patients' privacy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and may seriously damage their reputation if disclosed. As announc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the media's transmi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conforms with the laws or guidelines at the time. Thus, onl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can bear responsibility in this case. Nevertheles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media may also be held responsible for the violation of the patients' personality rights with infectious diseases by processing

or expanding their published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paper, I will focus on whether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be recognized for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and whether there are legal remedies for the media if their publicity has violated personal rights.

Keywords: infectious disease crisis, information disclosure, freedom of expression, defamation, right to be forgotten

[ 논문투고일 2021. 6. 18.    논문수정일 2021. 7. 20.    게재확정일 2021. 7. 27. ]